

위 원 회 개 최 결 과 보 고

■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개최일시 : 2016. 3. 9(수) 10 : 00 ~ 12 : 15

☐ 개최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1.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참석위원 : 6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참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 수정내용

○ 안 제3조제5항제1호다목을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로 수정

□ 질의 및 답변

< 신영은 위원 >

○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중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허준 위원 >

○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에 따른 체납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 이용범 위원 >

○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느 한쪽이 고의로 파산하여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피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던적은 있는지? 시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중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은 인천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 유일용 위원 >

- 조례안 제3조5항1호다목중 “자본금 50억원 및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는 기업체가 해당되는데, 이는 기업체에 대한 규제요건이 강화되어 기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음.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본 조항은 좀더 검토가 필요함.

→ 전국이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이영훈 위원 >

- “자치법규 기본안”에 대한 설명 필요. 우리시에서 제출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있는지. 지자체 현실이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향후 이런식의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 유일용 위원 >

- 제23조 “납세담보물의 보관” 중 제1항제3호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를 삭제한 이유는? 공탁영수증, 등록확인증은 어디에 보관하나.

2.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참석위원 : 6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 참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 질의 및 답변

< 신영은 위원 >

- 개정안중 “투표권”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 개정조례안과는 별개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요구.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 필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인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치계획 등에 대해 향후 설명해 달라

< 유일용 위원 >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규칙하고 조례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지?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참석위원 : 6명 (차준택, 유일용, 허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참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광역교통정책관

◆ 수정내용

- 안 제5조제3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를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수정

- 안 제5조제3항 각호를 삭제

□ 질의 및 답변

< 신영은 위원 >

-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6조 운휴일 제외 사항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인지? 비상시 불가피하게 운행하는 경우는 운휴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다.

→ 광역교통정책관 :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했을 경우 운휴일 제외신청을 하면 됨.

< 허준 위원 >

- 승용차요일제 위반차량 단속은 어떻게 하나. 인천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지.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해서 감면한 자동차세를 100% 추징을 하였는지. 요일제 위반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완화할 경우 기대효과는?

→ 광역교통정책관 : 인천시내 주요거점에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기획조정실장 : 요일제 위반횟수를 3회에서 5회로 완화할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높아질 것임.

< 이영훈 위원 >

○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가 2015.1.12 개정되었고 시세 감면 조례도 2015.1.12 개정되었는데 왜 승용차요일제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는지? 행정적 처리에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본다. 강화군과 옹진군 조례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동차세 소급적용에 대한 사항도 말이 안된다고 본다.

○ 서울시는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조치방안은.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단속방법은? 양체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승용차요일제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이 투입되면 이것에 대한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광역교통정책관 :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단속 등 일부 어려운점이 있음.

< 유일용 위원 >

○ 개정안 제5조제3항제1호를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와 연계되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이용범 위원 >

○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규정 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위반횟수 10회이상, 감면을 10%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 1개 제작하는데 얼마가 소요 되는지?

→ 200원정도 소요된다

○ 승용차요일제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 이영훈 위원 >

-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의 참여자에 대한 혜택 “주차요금의 경감” 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당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보고자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 동 향